

2023년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연간 공모계획 공고

「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 「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침」에 따라 2023년도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2. 2 .
서울특별시청

□ 연간 공모 계획/재심사

사업명	횟수	공고 월(예정)	비고
예비사회적기업 지정	2	'23년 3월초, 9월초	
일자리창출 지원	1	'23년 7월초	
전문인력 지원	1	'23년 8월초	
사회보험료 지원	1	'23년 2월중순	
사업개발비 지원	1	'23년 2월중순	
일자리창출 재심사	2	'23년 2월 중순(4,7월 약정만료 기업) '23년 8월 중순(10월 약정만료 기업)	
전문인력 재심사	수시	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90일전부터	

※ 상기 일정은 업무여건 및 수요,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□ 지원 대상 및 내용

사업명	대상	내용
예비사회적기업 지정	예비사회적기업 희망기업	예비사회적기업 지정 (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 부여)
일자리창출 지원	(예비)사회적기업	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 근로자 임금
전문인력 지원	(예비)사회적기업	월 250만원 한도 내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
사회보험료 지원	사회적기업	월 5명 이내에 대한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
사업개발비 지원	(예비)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자활기업(법인), 사회적협동조합	연간 사회적기업 1억원, 예비사회적기업 · 마을기업 · 자활기업(법인) · 사회적협동조합 5천만원 이내

※ 지정 및 지원 요건 등은 차후 공모 내용 확인

□ 추진 절차

세부 절차	수행 주체
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공고	서울시
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상담 및 컨설팅(상시)	서울시 및 통합지원기관
공모신청서 제출 -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SEIS) 별도 입력	신청기업
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, 검토보고서 작성	서울시, 지방고용청, 통합지원기관
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의	서울시
심사결과 통보	서울시
약정체결(서울시-사업참여기업)	서울시, 선정기업

□ 문의처 및 상담

구 분	서울시	통합지원기관
조직(부서)	공정경제담당재정지원담당	한국미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
연락처	재정지원 : 02-2133-5492 예비지정 : 02-2133-5498	02-365-0330
역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계획 수립 ▶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·심사·선정 ▶ 재정지원사업 사업참여기업 공모·심사·선정·약정체결·보조금 지원 ▶ (예비)사회적기업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충족에 필요한 사항 컨설팅 및 사업설명회, 현장실사 지원 등 ▶ 재정지원사업 신청기업 상담 및 현지실사, 사회적가치 검토 등 ▶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상시컨설팅

(참조)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사업 개요 각 1부.

참고 1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

1 지정 개요

○ 사업목적

-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·육성하여, 복지·환경·문화·지역개발 등 지역별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

1.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

-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,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

2. 사회적기업

-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

○ 지정기간 : 지정일로부터 3년간

- 단, 마을기업, 농어촌공동체회사,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

○ 지원내용

- 일자리창출·전문인력·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

※ 단,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(예비)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지원 불가

-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, 경영컨설팅기관 매칭 등 경영지원

1 조직형태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 - ① 「민법」에 따른 법인·조합
 - ②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
 - ③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
 - ④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
 - ⑤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 - ⑥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
 - ⑦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 -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 - *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(어)조합법인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(어)업회사법인 등
 - ⑨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·미술관
 - ⑩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·단체

2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
 -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

-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

○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

※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(실적 기간 : 3개월)

○ 단,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% 이상이어야 하며 관청은 일자리기준을 충족해야 함 (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은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)

※ 고용보험 가입여부 등으로 판단,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,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

《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》

- 사회서비스제공형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 분의 30 이상일 것
- 일자리제공형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,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
- 지역사회공헌형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
 -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: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(이하 “지역취약계층”이라 한다)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
 - 지역의 빈곤, 소외,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: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
 -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·마케팅·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: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
- 혼합형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
- 기타(창의·혁신)형: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 것

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

-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
 - ※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,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
- 단,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
 - ※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
- 사업기반(사업장, 근로자 등)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

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에 따라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
 -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
 - ※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
 -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

5]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

-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,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
 -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
 -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(위반사항 해소 포함)로 판단
-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(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등)

6] 지정제한

-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 시점(공고일)부터 1년간(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) 신청 제한
 - 제한기간 횡수 기산방법 : 2017.1.1. 신청 분부터 적용, 지역형·부처형 합산
-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, (예비)사회적기업 인·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·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

《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의 기준 》

-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
-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
-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
-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, 사업내용, 임원·근로자 등 구성원,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

-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,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

3 심사내용 및 신청절차

1 주요 심사내용

- ①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부
- ②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

- ▶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로 갖추어야 함
- ▶ 모법인으로부터 분리·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 받을 수 있음
- ▶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
 -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 및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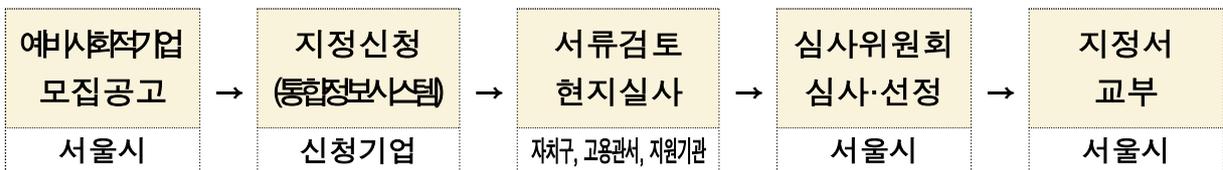
③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

- ▶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
- ▶ 사회적 목적의 실현은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비율을 만족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, 법 제8조 제1항 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직의 “주된 목적”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인정

④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

2 신청절차

- 접수기간 : 차후 공모 내용 확인
- 신청방법 : 기간 내 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 입력 및 등록
 - ※ 시스템 문의 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☎1661-4006
- 선정절차



4 지정 후 유의사항

1 지정취소

-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,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
- 자치단체장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
-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
 -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하고,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
 - 폐업,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(국세청 자료 등으로 확인)

2 지정반납

-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, 도산 등으로 인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정을 반납할 수 있음

3 사업보고서 제출

- 사업보고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, 전체 사회적·경제적 성과분석 등에 활용
 -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년도말 기준 사업보고서를 매년 5월말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함
- 기한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시정지시 처분
 - 사업보고서 제출 시까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중

인 지원금의 지급을 보류하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지정취소를 의뢰

참고 2 일자리창출 사업(신규 및 재심사)

1 사업 목적

- (예비)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

2 사업 개요

- 지원기간 : 지원약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(최대지원기간 5년)

구 분	예비사회적기업	사회적기업
지원기간	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	인증 후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

※ 매년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결정, 지원기간 중 인증·지정 기간이 종료된 경우 종료기간까지 지원

- 지원규모 및 내용

- 지원인원 : 기업당 1인 이상, 최대 50인 이하
- 지원내용 :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
- 지원비율 : 참여지원연차에 따라 지원 비율 차등 적용

구 분	예비사회적기업	사회적기업
일 반	1~2년차 50%	1~3년차 40%
취약계층	1~2년차 70%	1~3년차 70%

1 [예비]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(신규)

○ 참여자격

- 공고일 현재 서울시 내 사업장을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(지역형, 부처형)

《 참여제외 대상 》

- ①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
- ②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
 - 다만, 특정취약계층(중증장애인)을 근로자의 20%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가능
 -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
- ③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30%에 미달하는 기업(일자리제공형은 50%에 미달할 경우)
- ④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고용조정(감원) 또는 고용유지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
 - 단,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
 -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이전에 근로자를 고용조정(감원)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취소
- ⑤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
 - 예비자격으로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고, 인증으로 전환된 기업은 인증자격으로 신청 가능
-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(가사간병서비스, 산모신생아도우미, 장애인동재활치료, 장애인활동보조, 노인돌보미, 지역사회투자사업 등)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 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
- ⑦ 지속적·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·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
- ⑧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
②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(재심사)

○ 재심사 참여자격

-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수행기업 중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

《 재심사 참여제외 대상 》

- ① 유급근로자(자체 고용근로자)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
- ② 일자리창출사업(신규) 참여 제외 대상 기업
- ③ “지원기간 중” 임금체불 발생 기업
- ④ 직전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

○ 재심사 탈락된 기업은 그 후 공모사업에 참여 가능

- 신규신청기업의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선정된 경우에는 종전 지원연차의 다음연차 지원 비율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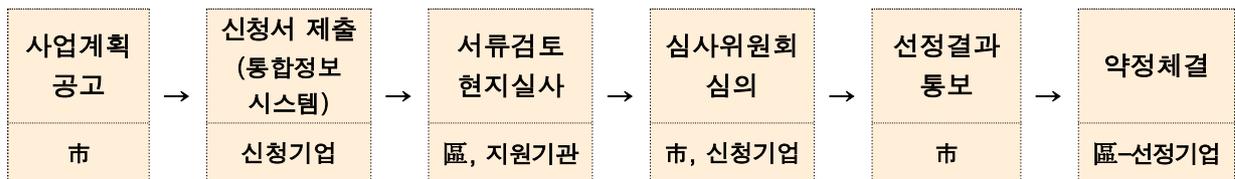
4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접수기간 : 차후 공모 내용 확인

○ 신청방법 : 기간 내 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 입력 및 등록

※ 시스템 문의 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☎1661-4006

○ 선정절차



- 서류검토, 현지실사 결과 요건 미충족 기업은 심사 제외
- 심사위원회 심의 시 해당기업은 참석하여 사업계획 및 제출 서류 등을

기반으로 설명하여야 함(별도 일정 통지)

5 심사 기준

○ 인증/지정 별 심사기준

- 예비사회적기업 :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중점 심사
- 인증사회적기업 : 수익창출가능성,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점 심사

○ 심사항목별 심사기준(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)

< 신규 >	< 재심사 >
• 사회적 가치(30점)	• 사회적 가치(35점)
• 고용성과(30점)	• 고용성과(30점)
•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건실성(30점)	•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건실성(35점)
• 기업혁신(10점)	• 자율경영공시 여부(가점 5점)

6 신청 서류

《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SEIS) 입력 》

- ① 사업 신청서[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~제2호의2서식, 시스템 입력]
- ②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계획서(별지 제3호서식)
- ③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[신규] [재심사]
- ④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 [신규] [재심사]
 - (신규) 별지 제4호의2서식, (재심사) 별지 제4호~제4호의2서식
- ⑤ 사회적가치 측정 보고서 (시스템 서류 활용) [신규] [재심사]
- ⑥ 다음의 사회적(경제)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(☞, ☜ 중 택일) [신규]
 -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e-러닝 이수 내용(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ID 제출)
 - ※ '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(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)
 - 지방자치단체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,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,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(5시간 이상 교육과정, 공식 인증된 수료증)
 -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

※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

-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재무제표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부가세신고내역(부가가치 신고서), 거래처별합계표(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)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
-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 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
-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/ 취약계층 증빙자료 첨부
-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(스캔을 통한 전자화)

참고 3 전문인력 지원사업

- 사업내용 : (예비)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
- 참여자격 : 공고일 현재 서울시 내 사업장을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(지역형, 부처형)
- 지원인원
 - 인증사회적기업 : 기업당 최대 2명
 - 예비사회적기업 : 기업당 최대 1명
- 지원금액 : 1인당 월 25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
 - ※ 자부담 : 예비(1년차 10%, 2년차 20%), 인증(1년차 20%, 2년차 30%, 3년차 50%)
- 지원기간 :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

구 분	예비사회적기업	사회적기업
지원기간	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분야별로 2년	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분야별 3년

※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, 지원기간 중 인증·지정 기간이 종료된 경우 종료기간까지 지원

- 신청방법 : 상시 접수,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후 서류제출
- 지원절차



첨부 1 신청 서류

《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SEIS) 입력 》

- ① (예비)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[(예비)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(신규), 제4호(재심사) 서식]
- ② (예비)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[제2호(신규), 제5호(재심사) 서식]
- ③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(별지 제7호의 2 서식)
- ④ 다음의 사회적(경제)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(㉠, ㉡ 중 택일)
 -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e-러닝 이수 내용(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ID 제출)
 - ※ '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(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)
 - 지방자치단체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,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,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(5시간 이상 교육과정, 공식 인증된 수료증)
 -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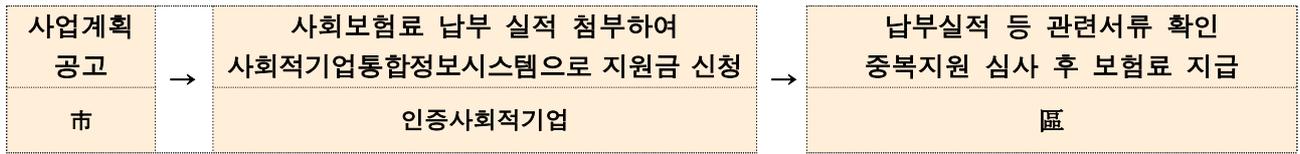
참고 4 사회보험료 지원사업

- 사업내용 :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
- 참여자격 : 공고일 현재 서울시 내 사업장을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**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**
 - ※ 다만, 「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」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
- 기업별 지원한도 : 5명

《 지원제외 대상 》

- ▷ 대표자·등기임원 및 대표자·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
 - ① 대표자·등기임원의 배우자
 - ② 대표자·등기임원의 형제자매
 - ③ 대표자·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
 - ④ 대표자·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
 - ⑤ 대표자·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
- ※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하나, 그 근로자의 친족도 등기임원의 친족으로 지원 제한
- ▷ 사회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임의로 미가입된 자
 - 국민연금 연령 제한 등 사회보험별 운영 정책에 따라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

- 지원기간 :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최대지원기간 4년
- 지원내용 :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
- 지원수준
 -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
 - ※ 고용보험 능력개발·고용안정 (0.25%), 산재보험 (0.6%)
 -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고시된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
 - ※ '23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9,620원,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
 - 지원한도 : 4대 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206,050원
- 신청방법 : 상시 접수,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후 서류제출
- 지원절차



첨부 1

신청 서류

《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SEIS) 입력 》

- 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(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 서식)
- ②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(계좌이체, 카드납부 내역)
- ③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
- ④ 월별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
 - 고용산재 개인별 부과지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, 건강·장기요양보험 납부 확인서, 기타 근로자성 판단 및 보험료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등
- ⑤ 급여이체내역서(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이체 내역)
- 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
- ⑦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(별지 제1호의2 서식)
 - ※ 임금대장(자체 고용근로자 포함)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

참고 5 사업개발비 지원사업

1 사업 목적

- 브랜드(로고)·기술개발 등 R&D 비용, 홍보·마케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·안정적 수익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

2 참여 자격

- 참여자격 : (예비)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(법인)
 - *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동시에 신청 불가
 - ** 자활기업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,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

《 참여제외 대상 》

- ▷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
- ▷ 유급근로자(자체 고용근로자)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는 기업
- ▷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
- ▷ 당해연도에 타 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업비,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
 - ※ 지원사업 또는 항목이 다르더라도 당해연도 참여제한
- ▷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
- ▷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
3 지원 내용

- 지원한도
 - 사회적기업 : 1억원 이내
 - 예비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(법인) : 5천만원 이내

- 공동상표·브랜드 개발 : 3억원 이내
 - ※ 공동상표·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·최대지원금액 내 기업 일 것
(기업 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 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)
- 자부담 : 총사업비의 10% 이상을 자부담 (1회차 10%, 2회차 20%, 3회차 이상 30%)
 - 부가가치세는 총사업비에서 제외 됨(VAT 기업부담)
- 지원금 지급 : 최소 2차례(각 50% 원칙) 이상 나누어 교부, 예산계획 및 자부담 집행 등을 평가하여 잔여 교부
- 사업기간 : 2023. 12. 31. 이내
- 지원기간
 - 예비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: 2년
 - 인증사회적기업 : 3년
 - *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1년간 최대 5천만원(2년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불가) 지원
 - **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타 사회적경제기업이 고용노동부 육성팀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받는 당해 연도에는 사업개발비 지원 불가
 -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받은 경우에는 1년을 받은 것으로 계산
 - 사업개발비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

《 사업개발비 사용불가 항목 》

- ① 신청기업의 인건비, 퇴직적립금, 근로자 복지 비용
- ②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
- ③ 유형의 시설·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
※ 자본재 리스는 자부담비율 50% 이상을 조건,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가능
- ④ 사무용품, 공과금,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
- ⑤ 인사·노무·회계·경영컨설팅 비용
- ⑥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(시제품개발시 총 사업비의 20% 한도로 인정)
- ⑦ 회계감사 비용, 소송대리 비용
- ⑧ 보험료, 기부금, 자금조달비용(대출 이자), 각종 세금(부가세 등)
- ⑨ 국비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 불가(훈련과정 미개설 등 극히 예외의 경우 가능)
- ⑩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
- ⑪ 그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

4 심사 기준

- 사업계획(40), 기업성장성(30), 사회적가치(30), 자율경영공시 참여기업(2)의 심사점수를 종합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경우 선정

5 신청방법 및 절차

- 접수기간 : 차후 공모 내용 확인
- 신청방법 : 기간 내 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 입력 및 등록
- 선정절차



- 서류검토, 현지실사 결과 요건 미충족 기업은 심사 제외
- 심사위원회 심의 시 해당기업은 참석하여 사업계획 및 제출 서류 등을 기반으로 설명하여야 함(차후 공모 확인)

《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SEIS) 입력 》

- ① 사업개발비 신청서(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~제1호2서식)
- ②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, 마을기업 지정서, 자활기업 인증서(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)
- ③ 법인등기부등본
- ④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(별지 제1호의3 서식)
- 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(별지 제1호의4 서식)
- ⑥ 사업비 적정성 확인 증빙자료(비교견적서 및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)
 - 견적서 금액은 부가세 별도(부가세는 사업비에서 제외)
- ⑦ 다음의 사회적(경제)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(㉠, ㉡ 중 택일)
 -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e-러닝 이수 내용(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ID 제출)
 - ※ '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(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)
 - 지방자치단체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,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,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(5시간 이상 교육과정, 공식 인증된 수료증)
 -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
- ⑧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(해당기업)
- ⑨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 (2회차부터 해당)
- ⑩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(별지 제1호의5 서식)
- ⑪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(시스템 서류 활용) 및 각 지표별 증빙자료
 - ※ 증빙자료 미첨부 시 실적 미인정

※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

-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부가세신고내역(부가가치신고서), 거래처별 합계표(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)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